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설보험₍₁₅₀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설보험₍₁₅₀₄₎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설보험(1종-월 납)₍₁₅₀₄₎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설보험(2종-일시납)₍₁₅₀₄₎

※ 위 상품명 중 ‘[]’ 부분은 상품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련번호로써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 안내자료등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 험 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 험 료 납입기간	보 험 료 의무납입기간	가입나이
1 종	월 납	종신	전기납	12년	만15세 ~ 65세
2 종	일시납		일시납	없음	만15세 ~ 70세

주) 월납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한 기간만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은 연장됩니다.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월 납 :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이며, 납입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1% ~ 5%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의 최소납입보험료는 10만원입니다.

(2) 일시납 :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이며, 납입 한도는 최저 5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기본보험료를 증액 및 감액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0만원입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0만원입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입이 가능하며, 월납의 경우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3)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월 납】

- ①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이상인 경우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 $\times$ 12)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경과년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 분	납 입 한 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납입기간 $\times$ 2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times$ 경과월수 $\times$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추가납입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이상인 경우 가입후 경과년수별로 연간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

【일시납】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00% 이내로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을 따릅니다.

구 분	납입한도
총납입한도	일시납보험료의 200%
연간납입한도	일시납보험료 / 10 $\times$ 200%

다. 보험료 납입한도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의 총액과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의 합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선납이 가능합니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표준이율"로 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월납보험료를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선납보험료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월 납】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 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 (2)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비례 유지관련 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나. 변액보험은 “가” 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계약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 (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 시는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 시에는 “라”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의 계약자 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라. 부활(효력회복)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된 보험료 완납일
- (2) 연체된 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마.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의 미공제 월대체공제액을 각 펀드에서 공제합니다.

【일시납】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월대체공제액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해지계약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 (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 시는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 시에는 “다” 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의 계약자 적립금(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을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다. 부활(효력회복)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증액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일
2. 증액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승낙일

라. 증액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의 미공제 월대체공제액을 각 펀드에서 공제합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합니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인출금액은 인출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2개월분의 월대체공제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라. 중도인출액은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에서 부족한 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마. 『중도인출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제외)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보험계약대출은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에서 부족한 경우에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 라. 계약자는 “가”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금액(다만, 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보험계약대출시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또한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마.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13.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월 납】

- 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나.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경과 후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납】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월 납】

"월대체공제액"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과 상관없이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위험보장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위하여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월대체공제액이 차감되므로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월대체공제액은 의무납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말하며,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계약당 유지관련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경과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계약당 유지관련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일시납】

"월대체공제액"이라 함은 계약의 유지, 위험보장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위하여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 중 납입후 유지관련 비용, 위험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공제액이 차감되므로 계

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월 납】

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경과 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일시납】

가.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나.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7. 기납입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기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

다. 다만, 해당월 특약보험료 해당분이 납입되지 않아 월대체공제액으로 공제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나. 중도인출후 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text{인출후 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전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후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전 계약자적립금}}$$

다. 기본보험료 감액후 기납입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text{감액후 기납입보험료} = \text{감액전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합니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합니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 ① 채권형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

유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② 가치주식형 : 우량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종목 중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③ 성장주식형 : 우량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종목 중 시장평균 이상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④ 미국주식형 :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표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달러표시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달러표시 우량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의 달러표시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ETF에 투자할 경우 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글로벌주식형 : 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⑥ 인덱스주식형 : KOSPI200 인덱스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

장종목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⑦ 아시아주식형 : 아시아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⑧ 유럽주식형 : 유럽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⑨ 글로벌채권형 : 해외 각국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⑩ 브릭스주식형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⑪ 골드투자형 : 금 상품 가격 추종을 위해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예치, 단기대출 등 유동성 자산(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을 포함)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ETF에 투자할 경우 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⑫ 글로벌 고배당 주식형 펀드 : 전세계 고배당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⑬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⑭ 글로벌 멀티인컴 펀드: 전세계 고배당 주식, 채권 및 대안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⑮ MMF형: 단기채권,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예금 등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가입중인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3)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특별계정적립금)

펀드명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합 계	
					매년(%)	매일
채권형	0.34%	0.10%	0.02%	0.02%	0.48%	0.0013150685%
성장주식형	0.53%	0.21%	0.02%	0.02%	0.78%	0.0021369863%
가치주식형	0.51%	0.23%	0.02%	0.02%	0.78%	0.0021369863%
미국주식형	0.30%	0.05%	0.04%	0.02%	0.41%	0.0011232877%
글로벌주식형	0.35%	0.15%	0.04%	0.02%	0.56%	0.0015342466%
인덱스주식형	0.44%	0.20%	0.02%	0.02%	0.68%	0.0018630137%
아시아주식형	0.35%	0.05%	0.04%	0.02%	0.46%	0.0012602740%
유럽주식형	0.40%	0.10%	0.04%	0.02%	0.56%	0.0015342466%
글로벌채권형	0.25%	0.05%	0.04%	0.02%	0.36%	0.0009863014%
브릭스주식형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골드투자형	0.30%	0.05%	0.04%	0.02%	0.41%	0.0011232877%
글로벌 고배당주식형	0.50%	0.10%	0.04%	0.02%	0.66%	0.0018082192%
글로벌 하이일드채권형	0.50%	0.08%	0.04%	0.02%	0.64%	0.0017534247%
글로벌멀티인컴	0.50%	0.05%	0.04%	0.02%	0.61%	0.0016712329%
MMF형	0.15%	0.01%	0.02%	0.02%	0.20%	0.0005479452%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1)의 표에서 정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 펀드의 유형 및 수’에서 규정한 펀드 중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대 14개까지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펀드 각각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되며,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3) 펀드 변경

-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①에 따른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다만, 펀드 적립금의 이전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한합니다.
- ③ 회사는 ①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적립금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마.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를 말하며, 이하 "펀드자동재배분 주기"라 합니다)마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니다.
- (2) (1)의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됩니다.
-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일시납에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기별 계약해당일- 2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자동재배분의 비율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수익자동이전 및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신청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재배분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수익자동이전 및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 펀드자동재배분시 기준가격은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바. 계약자의 펀드수익자동이전 선택

-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월납의 경우 5년, 일시납의 경우 3년이 지난 후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수익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특별계정적립금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을 최초로 달성할 때마다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액 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합니다.
- (2) 계약자는 펀드수익자동이전 선택시 아래 목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납입보험료 대비 매 10% 초과시(예 : 110%, 120%, 130%, 140%, ... 달성시)
 - ② 기납입보험료 대비 매 20% 초과시(예 : 120%, 140%, 160%, 180%, ... 달성시)
 - ③ 기납입보험료 대비 매 30% 초과시(예 : 130%, 160%, 190%, 220%, ... 달성시)
- (3) (1)에서 채권형 펀드로의 펀드수익 이전시 각 펀드별 이전 금액은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금 비율로 합니다.
-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수익자동이전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펀드수익자동이전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수익자동이전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6) 펀드수익자동이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 펀드수익자동이전시 펀드수익자동이전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2) (1)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합니다.

아.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자금이체시 기준가격

- ① 자금이체시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 (a)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b)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제외)
 - (c)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 (d) 펀드자동재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 (e) 펀드수익자동이전을 실행하는 경우

자.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2) (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② (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합니다.

차.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카.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타.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⑤ ①호 내지 ④호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1)호 및 (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사업방법서 “22. 기타사항”의 “나”항에 따라 이체합니다.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처리하는 경우
-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다만, 월대체공제액의 계산 및 차감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합니다.
- (2) (1)호의 규정에 따른 이체시 기준가격 적용일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합니다.

20.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합니다.

21.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사망보험금

구 분	사망보험금
월 납	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일시납	보험가입금액의 10% + 계약자적립금

나.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기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22. 기타사항

가. 보험가입금액

(1) 월납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 한도
최저	최고	
1,000만원	50억원	보험가입금액의 1% ~ 5%

(2) 일시납

구분	보험가입금액 한도(보험료)	
	최저	최고
기본보험료	500만원	200억원
증액기본보험료	500만원	200억원 (기본보험료 합산)

일시납보험의 증액기본보험료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와 합하여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2) 제(1)호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을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보험료

(a)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이내

-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계약해당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함)를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2회 기본보험료의 『계약해당일』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전일 때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 계약해당일이 지난 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로 합니다.

다만,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일』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전일 때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함)를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b)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12년(144회 납입) 경과 후

보험료 납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로 합니다.

- ③ ①및 ②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 ④ ②와 ③에서 이체금액은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합니다.

다.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한다.

- (1)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2)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대량의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계약자가 이 보험을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일반보험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일반보험은 계약자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종신보험 전환
- 무배당 정기보험 전환
- 무배당 연금보험 전환('22.기타사항 아. 무배당 LTC연금전환V특약 적용에 관한 특칙' 참조)

마. 이 보험에 추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합니다.

바.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 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사.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아. 「무배당 LTC연금전환V특약」 적용에 관한 특칙

- (1) 「무배당 LTC연금전환V특약」은 주보험 가입시의 기초서류(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연금사망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2) 「무배당 LTC연금전환V특약」으로의 전환은 주계약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3) 「무배당 LTC연금전환V특약」으로의 전환은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무배당 LTC연금전환V특약」으로의 전환 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무배당 LTC연금전환V특약」으로의 전환은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월납】

- ① 계약일부터 12년이 경과한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지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② 계약일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크고 9,000만원 이상인 계약

【일시납】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계약

다만, 월납 및 일시납 계약에서 연금지급형태 중 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일이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10년 이상인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 (5)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 (6)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7) 「무배당 LTC연금전환V특약」으로의 전환 시 주계약 전체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부분 연금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차.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카.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합니다.